

신고 방법

① 홈택스로 한번에

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번으로
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자동 연결되고
별도 내용 작성 없이 신고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져 제공



*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홈택스 연계 없이도
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자동 채움 기능 제공

② 방문 신고 장소 확대

(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)



납세지와 관계없이
전국 가까운 세무서 또는
자치단체¹⁾(시·군)
어디서나 방문신고²⁾

²⁾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(⑤참고)

③ 신고서식 및 제출 서류 간소화

모든 신고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하고, 공동사업자
분배 명세서 등 각종 첨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여
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최소화

④ 신고 가산세 면제

종합·퇴직소득분 확정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
신고기한 후 1달 이내에 기한 후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
무신고 가산세를 면제

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간소화

영세 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 인정

■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■
*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 서식(4)

업종별	직접연도 수입금액
1. 농업 및 임업, 어업, 광업, 도매업 및 소매업(상품중개업 제외), 부동산매매업, 아래 2,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	6천만원 미만
2. 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·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, 건설업(비주거용 건설 업은 제외), 조각품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), 운수업, 출판· 영상·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, 금융 및 보험업, 상품중개업	3천 6백만원 미만
3.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신입대업, 부동산관련 서비스업,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임대업(부동산신입대업 제외),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, 가구내 교환활동	2천 4백만원 미만

■ 남부자용 남부서 양식 ■

[illegible]

적용 방법

코로나19 피해, 납부기한 연장 안내

● **전 납세자 대상으로 2020년 8월 31일(월)까지 종합소득세·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.**



① 위택스 전자납부

위택스(www.wetax.go.kr) 또는 스마트위택스
(모바일앱) 이용 시 개인지방소득세를 조회·납부 가능

① 워택스 인터넷

위택스 회원가입 ▶ 공인인증서 로그인 ▶ 납부하기
▶ 안내에 따라 지방세 내역 확인 ▶ 결제방법 선택 ▶ 납부

② 위택스 모바일

구글플레이, 앱스토어 접속 ▶ 스마트 워터스 검색·설치 ▶ 공인
인증서 로그인 ▶ 지방세 내역 확인 ▶ 결제방법 선택 ▶ 납부

② 가상계좌 납부

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,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가능

① 모두채움신고 납부서

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여
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납부

② 일반 신고자

가상계좌 이용 시 사·군에 문의 후, 납부



③ 자동화 기기 납부

납부서 없이,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CD/ATM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가능

은행 또는 우체국 CD/ATM ▶ 카드 또는 통장투입
▶ '국세·지방세·공과금' 선택 ▶ '지방세' 선택
▶ '본인납부' 또는 '타인납부'(전자납부번호 필요) ▶ 납부